



해 양 수 산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귀 기관 및 업·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선박연료공급업 장비 명세 서류 발급 근거 마련 등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2024.7.1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데이터전략팀장,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해양레저관광과장,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해양공간정책과장, 해양보전과장, 해양생태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해양영토과장, 통상무역협력과장, 수산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수출가공진흥과장, 소득복지과장, 원양산업과장, 수산직불제팀장, 어업정책과장, 수산자원정책과장, 지도교섭과장, 어선안전정책과장, 어구순환관리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수산물안전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어촌어항과장, 해운정책과장, 연안해운과장, 선원정책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스마트해운물류팀장,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산업기술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로표지와장,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항만정책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투자협력과장, 항만연안재생과장, 항만기술안전과장,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기획총괄과장, 가족지원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만물류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해양항만과장), 충청남도지사(해운항만과장), 경상남도지사(해양항만과장), 전라남도지사(해운항만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운항만과장), 창원시장(항만물류정책과장), (사)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사)한국검수검정협회회장, (사)부산항만산업협회회장, (사)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회장, (사)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사)한국급유선주협회회장, (사)한국엘에너지버킹산업협회회장, (사)한국선용품산업협회회장, (사)한국해운협회회장, (사)한중카페리협회회장,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사)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사)한국해운대리점협회회장

주무관

김운석

행정사무관

김상현

과장

전결 2024. 6. 26.

최문건

협조자

시행 항만운영과-3443

(2024. 6. 26.)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 <http://www.mof.go.kr>

전화번호 044-200-5774

팩스번호 044-200-5789

/ kimunseok@korea.kr

/ 대한민국 공개